



학교폭력예방법 법률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변경사항 정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INDEX

01 학교폭력 예방법이론

02 학교폭력 예방법 정리

03 학교폭력 예방법 적용

04 조치 불복절차

학교폭력 예방법이란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공갈)

성폭력

강요

학교폭력예방법이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u>치료 및 치료를 위한</u>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로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번해지자 개정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을
부과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조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할 의무"부과

가해자(교사 포함) 피해학생 분리

예방법 적용

가해자(교사 포함) 피해학생 분리조치 적용 기준

- ①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피해 학생 긴급조치 종류

- ① 피해학생 : 제1호(심리상담), 제2호(일시 보호),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가해학생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제3호(교내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② 답변서 송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자·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 (국, 공립, 사립)에 관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